

부**령****●국토교통부령 제82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2021년 2월 16일****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간(제24조제3항에 따라 반출되는 건설기계 또는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에는 반입 후 또는 사업재개신고 후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타워크레인을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을 “기간[제24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설치 이후부터 사용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대하여는 6개월”을 “대해서는 1개월”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대해서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를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을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을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비명령”으로,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해체,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으로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비명령의 지정기간 안에 시·도지사에게 정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정비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정비기간 연장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비명령의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표 중 기계·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계·기구	전조등시험기	40,000칸델라 이상
	유압계	300kg/cm ² 이상
	엔진압축시험기	70kg/cm ² 이상
	제동시험기	10톤 이상
	속도계시험기	10톤 이상, 120km/h 이상
	매연측정기(고정식)	0 ~ 100%
	매연측정기(휴대용)	0 ~ 100%
	소음측정기	120dB 이상
	볼트암페어미터	
	사이드슬립(side slip: 측면 미끄러짐) 측정기	
	진공계이지	
	디젤rpm미터(분당 회전수 측정기)	5,000rpm 이상
	축중계(軸重計: 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10톤 이상
	내시경	휴대용
	경사각도측정계	90° 이상
	타이어계이지	
	온도측정기	300℃ 이상
	비파괴시험장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별표 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1) 책임검사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계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검사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2) 검사원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분야를 전공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자동차정비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으로, “건설기계검사원”은 “자동차검사원”으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각각 같음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1) 책임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등록: 165,000원 · 재등록(검사소 입고검사): 82,500원 · 재등록(현장검사): 57,800원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82,500원(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 시: 57,800원) · 정기검사(현장검사): 57,800원 ·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82,500원 · 수시검사(현장검사): 57,800원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82,500원 -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하중 20톤 미만: 176,000원 ·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176,000원에 20톤을 초과하는 10톤마다 3,300원을 가산한 금액. · 정격하중 200톤: 314,600원 · 정격하중 200톤 초과: 314,600원에 200톤을 초과하는 10톤마다 4,4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형식승인: 572,000원 형식변경승인: 286,000원 형식신고: 462,000원 형식변경신고: 231,000원 동일형식수입신고: 231,000원
-----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수수료
○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서(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정한다)	○ 최초신청: 415,800원 ○ 변경신청: 293,700원 ※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서 첨부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836만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451만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495,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제1항 관련)

기종		연식	검사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0년 초과	2년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20년 초과	1년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20년 초과	2년 1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년 이하 20년 초과	1년 6개월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1년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11. 향타 및 항밭기	-	-	1년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1년 6개월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2년 1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2년 1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2년 1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1년
바.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1년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20년 초과	3년 1년
14. 그 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20년 초과	3년 1년

비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23]

수수료 등(제93조 관련)

종 목	금 액
1.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	1대에 대하여 4,000원
2.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1대에 대하여 1,000원
3.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1대에 대하여 1,000원
4.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열람 신청	등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5. 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재검사수수를 면제한다)	
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 검사	
1) 최초등록	1대에 대하여 165,000원
2) 재등록(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3) 재등록(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57,800원
나.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 시 57,800원)
2) 정기검사(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57,800원
3)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4) 수시검사(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57,800원
다.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1) 정격하중 2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176,000원
2)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176,000원에 20톤을 초과하는 10톤마다 3,300원을 가산한 금액
3) 정격하중 200톤	1대에 대하여 314,600원
4) 정격하중 200톤 초과	1대에 대하여 314,600원에 200톤을 초과하는 10톤마다 4,4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신청 또는 형식신고	
가. 형식승인	1형식에 대하여 572,000원
나. 형식변경승인	1형식에 대하여 286,000원
다. 형식신고	1형식에 대하여 462,000원
라. 형식변경신고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마. 동일형식수입신고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
7. 건설기계의 형식 확인검사 신청	
가. 최초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415,800원
나. 변경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293,700원
8.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1대에 대하여 8,360,000원 (비파괴검사 제외 시 4,510,000원)
9. 건설기계 부품인증 또는 부품인증 변경 신청	1부품에 대하여 495,000원
10.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30,000원
11.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5,000원
1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재개 신고	500원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2,500원
14.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2,500원
15.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32,000원
16.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500원
1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2,500원

비고: 제9호 부품인증을 위한 단계별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하고, 20년을 초과한 노후 덤프트럭·도로보수트럭 등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며,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1-3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덕유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덕유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9.430km²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56	56	-	
교통·운수시설	소 계	21	21	-	
	진입도로	2	2	-	
	주차장	3	3	-	
	탐방로	16	16	-	
공공시설	소 계	11	10	감 1	
	공원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3	3	-	위치 및 규모변경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 6	1 5	감 1	폐지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16	16		
	휴게소	2	2		
	대피소	2	2		
	공중화장실	12	12		
문화시설	소 계	2	3	증 1	
	자연학습장	2	2		
	전시장	-	1	증 1	신설
체육시설	소 계	2	2		
	스키장	1	1		
	골프장	1	1		
안전시설	소 계	4	4		
	자동우량경보시설	4	4		